

종합감사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2024년 청송군 경상북도종합감사 —

2024. 5.



< 재심의 결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

1. 일람표

(단위 : 천 원)

번호	소 관	건 명	행정상 조 치		재 정 상 조 치						
			시정	주의	회 수	금액	감 액	금액	추 징	금액	
계			12건	6	6	0	0	2	226,535	0	0
1	㉠ ㉠ 과	공무원 교육훈련(상시학습) 업무처리 부적정		1							
2	㉠ ㉠ 과	인사운영 부적정		1							
3	☺ ☺ ☺ ☺ 과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도·감독 소홀	1								
4	☀ ☀ ☀ ☀ ☀ ☀ ☀ ☀ 과	물품 구매 적격심사 경영상태 평가 부적정		1							
5	㉠ ㉠ 과	개인용 컴퓨터 및 모니터 구매 부적정		1							
6	▼ ▼ ▼ ▼ 과	조사료경영체 기계장비 지원사업 업무처리 부적정	1								
7	☀ ☀ ☀ ☀ ☀ ☀ ☀ ☀ 과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부적정	1 (통년)								
8	Φ Φ Φ Φ 과	청송 자연휴양림 운영·관리 부적정		1							
9	☐ ☐ ☐ ☐ ☐ 과	←←←←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추진 부적정	1				1	204,000			
10	☐ ☐ ☐ ☐ ☐ 과	㉠㉠ 개보수공사 추진 부적정	1				1	22,535			
11	≈ ≈ ≈ ≈ 과	▽▽▽ ▽▽▽▽▽ 신축공사 추진 부적정	1								
12	Ю Ю Ю Ю 과	내화·방화 관련 건축허가 처리 부적정		1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공무원 교육훈련(상시학습) 업무처리 부적정
소 관 청	청송군
관 계 부 서	인사과
내 용	

청송군에서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상시학습제도 운영, 승진임용 등 인사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별표1의 방법 및 기준에 따라 교육훈련 이수시간을 승진임용에 반영하여야 하고,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채우지 못한 공무원은 승진 심사 대상 또는 승진시험 응시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1. 교육훈련 집합교육 미이수자 승진임용 부적정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15호, 시행 2021. 1. 1.)의 Ⅱ.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상시학습)제도 운영편에 따르면 기초지자체의 경우 개인의 연간 교육훈련 기준시간 중 교육훈련기관 집합교육을 7시간 이수하도록 되어 있고 상기 사항은 2022. 3. 1. 이후 승진심사 시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경상북도에서는 상기 지침에 따라 기초지자체의 경우 2022. 3. 1. 이후 승진심사 시부터 교육훈련기관 집합교육 7시간 충족 여부 등을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경상북도 상시학습제도 운영계획”을 2021년부터 매년 시·군에 통보하였다.

따라서, 청송군 인사과에서는 관련 지침(집합교육 의무이수 사항 반영) 시행에 따른 인사행정정보시스템 반영작업(교육훈련기관 집합교육 이수 기준 입력) 등을

완료하여 개인이 인사랑 시스템을 통해 교육훈련기관 집합교육 실적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했어야만 하고 이를 통해 2022. 3. 1. 승진심사 시부터는 승진후보 대상자를 대상으로 교육훈련 집합교육 실적여부를 확인하여 미이수자 등이 발견 되었을 경우 승진심사에서 제외하도록 했어야만 했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아래 [표 1]과 같이 인사랑 시스템에 교육훈련기관 집합교육 이수 기준 등을 반영하지 않은 채 인사행정정보시스템을 운영하여 2021. 1. 1. 이후 소속직원들의 교육훈련기관 집합교육 이수실적이 없었음에도 전체 교육훈련시간이 충족되었다고 표현되도록 하였으며, 이로 인해 2022년 하반기(2022. 8. 29.) 및 2023년 상반기(2022. 12. 29.) 승진심사 시 교육훈련기관 집합교육 미이수자로 승진심사에서 제외되었어야 할 ※※ 6급 AAA 등 19명이 승진임용 되었다.

[표 1] 교육훈련기관 집합교육 미이수자 승진임용 현황

연번	승진심사일 (승진임용일)	승진직급		교육훈련(상시학습) 실적 현황				상시학습 충족여부
		직급승진	성 명	교육훈련 필요시간	교육훈련 인정시간	집합교육 필요시간	집합교육 인정시간	
1	2022.8.29. (2022.9.1.)	7→6	AAA	400시간	436시간	10시간	0시간	미충족
2	"	8→7	BBB	200시간	211시간 10분	10시간	0시간	"
3	"	7→6	BBB	480시간	581시간 05분	10시간	0시간	"
4	"	8→7	DDD	240시간	257시간 10분	10시간	0시간	"
5	"	8→7	EEE	240시간	268시간 50분	10시간	0시간	"
6	"	8→7	FFF	273시간	284시간 05분	10시간	0시간	"
7	"	7→6	GGG	366시간	410시간 29분	10시간	0시간	"
8	"	8→7	HHH	200시간	225시간 30분	10시간	0시간	"
9	"	7→6	JJJ	440시간	470시간 20분	10시간	7시간	"
10	2022.12.29. (2023.1.1.)	8→7	KKK	186시간	303시간30분	12시간	4시간	"
11	"	7→6	LLL	386시간	428시간	12시간	4시간	"
12	"	8→7	NNN	226시간	303시간55분	12시간	0시간	"
13	"	7→6	MMM	365시간	400시간54분	12시간	6시간	"
14	"	8→7	OOO	379시간	421시간40분	12시간	0시간	"
15	"	8→7	PPP	186시간	277시간40분	12시간	2시간	"
16	"	8→7	QQQ	226시간	243시간11분	12시간	0시간	"
17	"	7→6	RRR	386시간	414시간20분	12시간	0시간	"
18	"	7→6	SSS	332시간	360시간50분	12시간	10시간	"
19	"	7→6	TTT	425시간	438시간40분	12시간	0시간	"

※ 청송군 제출자료 재구성

2. 교육훈련 중복 입력자 승진임용 부적정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15호, 시행 2021. 1. 1.)의 Ⅱ.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상시학습)제도 운영편에 따르면 동일한 교육내용 또는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동일직급에서 1회에 한하여 인정하되 기관별·직급별 필수교육, 법령의 개정 또는 폐지, 법정 의무교육 등으로 재교육이 불가피한 사항과 연구사·지도사 및 일반직의 경우 해당 직급 재직기간 등을 감안하여 교육이수 3년이 경과한 경우 동일 교육과정이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교육실적 인정이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동일 연도 내 동일 과정은 인정되지 아니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상기 지침에 따르면 교육훈련부서에서는 교육훈련 실적의 적정관리를 위해 분기별로 점검하고 오류 및 부정 입력한 경우 교육훈련부서는 즉시 입력 내용을 삭제하고 부정 입력자에 대하여 필요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청송군 Ⅳ과에서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실적을 분기별로 점검·관리하여 동일직급에서 3년 이내에 동일과정을 중복으로 이수한 실적 또는 중복입력한 실적 등을 즉시 삭제하는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 실적을 채우지 못한 공무원의 경우 승진심사에서 제외 되도록 했어야만 했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아래 [표 2]와 같이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실적 점검·관리 및 적정 조치를 하지 않고 중복 입력(승인)된 교육훈련 실적을 삭제하지 아니 하였고, 중복 입력(승인)된 교육훈련 이수시간을 삭제하는 경우 승진심사일 기준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지 못해서 승진심사 대상에서 제외되었어야 할 대상자가 승진임용 되었다.

[표 2] 교육훈련 중복 입력자 승진임용 현황

승진의결일	승진후보자		총 족 필요시간	인정시간	중복시간	실 제 인정시간	총족 여부
	직 급	성명					
2022.12.29.	**** 7급→6급	***	281시간	296시간	63시간	233시간	부

※ 청송군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교육훈련기관 집합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 6급 AAA 등 19명과 동일직급에서 동일과정을 중복입력하여 실질적으로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채우지 못한 ***** 6급 *** 등 총 20명이 승진심사에서 제외되지 못하고 승진임용되었다.

조치할 사항 청송군수는

- 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인사운영 부적정
소 관 청	청송군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청송군 ☎☎과에서는 2020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승진 임용 등 인사업무를 처리하였다.

1. 정원을 초과한 승진임용 부적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0조에 따르면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직렬별 정원은 정원관리기관별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으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되,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청송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청송군 규칙) 제2조 별표¹⁾에 따르면 청송군에 두는 6급의 정원은 2021. 1. 1. ~ 2022. 1. 1.까지는 123명, 2022. 1. 1. ~ 2022. 7. 30.까지는 124명, 2022. 8. 1. ~ 감사일 현재까지는 133명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청송군 ☎☎과에서는 승진임용을 할 때에는 직급별·직렬별 정원의 범위에서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승진 임용하되 6급의 경우 인사 시행 시기별 최대정원을 초과하여 승진임용 해서는 안된다.

1) 시행시기별 청송군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제2조 별표의 6급에 대한 정원현황은 본문의 [표 1] 참고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아래 [표 1]과 같이 2020. 12. 29. 2021년 상반기 정기인사위원회 개최 시점 질병휴직 하였던 ** 6급 ***가 2021. 1. 1. 복직신청 하여 2021년 상반기 정기인사 이후 시점에 6급 현원이 정원초과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2021. 6. 25. 2021년 하반기 정기인사 및 2021. 12. 27. 2022년 상반기 정기인사에 따른 6급 승진요인 책정 시 상기 인원에 대한 현원 반영 등을 하지 않아 정원 대비 결원 요인이 없었음에도 추가로 결원요인이 있다고 관련자료를 작성하여 인사위원회에 심의·상정하여 2021년 하반기 정기인사 때 6급 1명, 2022년 상반기 정기인사 때 6급 1명이 추가로 승진임용되도록 하였다.

그리고 2023. 12. 26. 2024년 상반기 정기인사와 관련하여 인사위원회 개최 전 2023. 12. 18. 육아휴직 하였던 ** 6급 ***가 복직(2024. 1. 1.)신청서를 제출 하여 2024년 상반기 6급 승진요인의 경우 후속 승진 및 결원 등을 포함 11개 자리가 발생하였음에도 1개 자리를 추가 결원 산정 후 6급 12개 자리에 대한 승진요인을 책정하고 인사위원회에 심의·상정하여 2024년 상반기 6급 1명이 추가로 승진임용되도록 하였다.

[표 1] 정원초과 승진임용 현황

승진심사일 (승진임용일)	심사당시 6급 정·현원 및 과원 (별도정원 제외)				인사시행 이후 6급 정원 및 현원		비 고
	당해직급	정원	현원	승진요인 책정	정원	현원	
계							
2020.12.29. (2021.1.1.)	6급	123	117	7 (후속승진, 명퇴, 정원조정 등)	123	124	정원초과 +1
2021.6.25. (2021.7.1.)	"	123	115	9 (후속승진, 명퇴, 결원 등)	123	124	정원초과 +1
2021.12.27. (2022.1.1.)	"	124	117	8 (후속승진, 명퇴, 결원 등)	124	125	정원초과 +1
2023.12.26. (2024.1.1.)	"	133	122	12 (후속승진, 명퇴, 결원 등)	133	134	정원초과 +1

그 결과, 부적정한 인사 운용으로 인해 정원의 범위에서 정상적으로 승진 인사가 이루어졌다면 승진할 수 없었던 6급 4명이 추가로 승진하게 되었으며, 감사일 현재 청송군 6급 현원이 정원대비 1명이 초과되어 운영되고 있다.

2. 직렬불부합 승진인사 운영 부적정

「지방공무원법」 제8조에 따르면 인사위원회는 임용권자의 요구에 따른 보직관리 기준 및 승진·전보임용 기준의 사전의결, 승진임용의 사전심의, 지방자치단체의장이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공무원의 임용 교육훈련 보수 등 인사와 관련된 조례안 및 규칙안의 사전심의 등의 기능을 한다고 되어 있고,

또한, 같은 법 제39조에서는 승진은 같은 직렬의 바로 하급 공무원 중에서 임용하되, 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2조 및 제30조에 따르면 「청송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4조 및 「청송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청송군 규칙) 제2조에 의거 청송군 공무원의 직급에 따른 직렬별(복수·단수) 정원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공무원법」 제42조 및 제43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시험 또는 임용에 관하여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임용시험·승진·임용, 그 밖에 인사기록에 관하여 거짓이나 부정하게 진술·기재·증명·채점 또는 보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청송군 99과에서는 결원에 따른 승진임용을 위한 인사요인을 책정할 때에는 결원 발생 직렬의 바로 하급 공무원 중에서 승진임용하거나 복수직 정원이 있는 경우 그 복수직 정원에 해당하는 직렬 간에 직렬을 조정하여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 후 승진임용해야만 했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아래 [표 2]와 같이 2022. 12. 29. 2023년 상반기 승진인사를 위한 인사위원회 개최와 관련하여 ** 4급 승진에 따른 5급 승진 후속 의결 및 6급 명예퇴직 등 결원 보충에 따른 승진요인을 책정하면서 ** 5급의 경우 ** 5급과 복수 직렬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 6급의 경우 ** 6급 및 **

6급과 직렬조정이 불가능함에도 ** 5급의 **서기관 승진에 따른 후속 승진가능 직렬을 ** 5급으로, ** 6급 명예퇴직 등에 대한 승진가능 직렬을 각각 ** 6급 및 ** 6급으로 책정 후 승진이 가능하다고 관련자료를 작성하여 인사위원회 심의·상정하여 승진임용되도록 하였다.

[표 2] 복수직 정원 없는 직렬간 조정 후 승진 현황

연번	승진의결일 (임용일)	결원발생 사유	승진요인 직렬		규칙상 복수직렬현황	비고
			직급	인원		
	합계		5급 : 1명 6급 : 2명			
1	2022.12.29. (2021.1.1.)	승진후속 (** 5급→ **서기관)	**직렬 6→5급	1명	* ** 5급 복수직렬 현황 -*** -***** -*****	인사요인 사전 공개
2	2022.12.29. (2021.1.1.)	명예퇴직 (** 6급)	**직렬 7→6급	1명	* ** 6급 복수직렬 현황 -**** -*****	인사요인 사전 공개
3	2022.12.29. (2021.1.1.)	당연퇴직 (** 6급)	**직렬 7→6급	1명	* ** 6급 복수직렬 현황 -**** -*****	인사요인 사전 공개

그 결과, 복수직렬로 규정되지 않아 승진할 수 없던 직렬인 ** 5급 1명, ** 6급 1명, ** 6급 1명 등 총 3명이 승진임용되었다.

3. 보건소장 내부임용에 따른 후속인사 등 부적정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와 보건복지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한 “보건소장 임용 관련 재안내(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 2016. 10. 31.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보건소장(보건의료원의 경우에는 원장)은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되,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이 어려운 경우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에 따른 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의무·약무·간호·보건진료(이하 “보건 등”이라 한다) 직렬의 공무원으로서 보건소장으로 임용되기 이전 최근 5년 이상 보건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청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의하면 청송군

*****에 두는 원장은 지방*****관으로 보하되,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의거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임기제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르면 개방형직위의 충원을 위하여 사전에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도별 시험시행계획을 수립 후 10일 이상 공고하되, 응시자가 없거나 적격자가 없다고 결정한 경우 가장 적격자로 판단되는 소속 공무원을 1년의 범위에서 그 개방형직위에 임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임용 후 1년이 지났을 때에는 해당 개방형직위를 지체없이 충원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36호, 2020. 12. 28.) [3]. 충원시기 및 선발편에 따르면 개방형직위에 해당하는 결원발생이 확정된 이후나 개방형직위 모집공고 직전에 내부공무원을 당해 개방형직위에 전보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해치고 선발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손상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청송군 ㅅㅅ과에서는 청송군 *****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지역보건법에 맞게 의사 면허가 있는 *****관을 임용하되, 의사면허가 있는 *****관을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개방형직위를 통해 의사면허가 있는 자를 공개모집 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해야만 하고, 만약 공개모집에 따른 응시자가 없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 등 직렬에 해당하는 내부공무원을 *****으로 임용했어야만 했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2021. 1. 1. 청송군 ***** 내부임용(*****관 ***)과 관련하여 이미 2019. 7. 1. ***** 결원이 발생하였음에도 2019. 7. 1. ~ 2021. 1. 1.까지 별도의 공개모집 절차 등을 하지 않은 채 ***** 직위를 공식으로 유지하다가 ** 5급 ***가 4급 승진소요연수를 초과하는 시점(2021. 1. 1.)에 *****에 대한 공개모집 및 내부임용 등에 대한 결정도 없었음에도 2020. 9. 25. 2020년 하반기 5급 승진의결 인사요인에 ***** 공식에 따른 결원을 포함시켜 ** 6급 1명을 ***** 결원에 따른 후속인사로 결정되도록 하였다.

그리고 2020. 12. 28. 2021년 상반기 인사위원회에 청송군 ***** 신규채용 내용을 상정하면서 의사면허를 보유한 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개모집 등이 전무하였음에도 코로나19 시기로 인해 적격자를 임용하기 곤란하다는 사유로 당시 ** 5급이었던 ***를 *****으로 내부 임용하기 위해 *****관으로 승진임용하였다.

더욱이, 청송군에서는 2020. 12. 28. 개최된 청송군 ***** 신규 채용관련 인사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인사위원들에게 적격자가 없어 내부임용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만 가능하고 1년이 도래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채용공고를 진행하여 의사면허를 보유한 자를 채용하겠다고 하였음에도 2021. 1. 1. *** ***** 내부임용 이후 1년이 도과되는 시점까지 의사면허를 보유한 자를 대상으로 또다시 어떠한 공개모집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채 코로나19 시기 및 적격자가 없다는 사유로 *****관 ***를 2022. 1. 1. 청송군 *****으로 또다시 내부임용하였다.

그 결과 지역보건법을 위반하여 청송군 *****이 재차 임용되었으며, 공개모집 등을 통해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였다더라면 승진할 수 없었던 5급 1명이 승진의결 되었다.

조치할 사항 청송군수는

- 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도·감독 소홀
소 관 청 청송군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청송군 ☺☺☺☺과에서는 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 「노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및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노인복지시설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1. 시설수급자 특별위로금 집행 부적정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4항 및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보건복지부령) 제2조, 제15조, 제28조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하고, 사회복지시설 회계는 그 설립 목적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시설회계의 예산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51조에 따르면 군수는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자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하며, 같은 법 제40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별표 4] 행정처분의 기준 2. 개별기준 제4호의 규정에 의거 군수는 사회복지시설의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또는 그 밖에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그 시설에 개선명령을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보장시설이 수급자에 대하여 시설 생활에 필요한 주식비, 부식비, 취사용 연료비, 의류·신발비, 특별위로금 등을 시·군 담당부서를 통해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특히, 특별위로금은 급여생성 마감 전일까지 시설에 입소하고 있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매년 설·추석 전월에 50,000원을 연 2회 지급(2020년 37,300원, 2021년 ~2023년 50,000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반드시 보장시설 수급자 개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청송군 ☺☺☺☺과에서는 노인복지시설에 일괄 지원된 생계급여 중 명절 특별위로금이 보장시설 수급자 개인에게 직접 지급되고 있는지에 대한 회계관리 등의 지도·감독을 하고, 개인에게 직접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정, 개선명령 등 조치를 취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아래 [표 1]과 같이 청송***** 등 2개소에서 시설 수급자 개인에게 지급되어야 할 명절 특별위로금 4,996천 원을 개인별 지급하지 않고 시설 부식비로 집행하였음에도 특별위로금 회수, 개선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표 1] 시설수급자 특별위로금 개인 미지급 현황

(단위 : 원)

시설유형	시설명	시기		특별위로금 개인 미지급 현황				비고
		연도	월	내용	수급자(명)	단가	금액	
계							4,996,000	
노인 복지시설	청송 *****	2020	9월(추석)	시설 부식비로 집행	20	37,000	746,000	사후 지급
		2021	2월(설)	„	21	50,000	1,050,000	사후 지급
		2021	9월(추석)	„	22	50,000	1,100,000	사후 지급
	경북 *****	2022	9월(추석)	„	21	50,000	1,050,000	
		2023	9월(추석)	„	21	50,000	1,050,000	

※ 청송군 제출자료 재구성

※ 감사기간 중 확인 결과 : 개별 미지금액 4,996,000원 중 청송*****은 2020~2021년 기간 중 개인별로 미지급한 명절 특별위로금(2,896,000원)을 2021. 12. 24. 사후에 일괄적으로 개인별 지급(자진 지급)하였고, 경북*****은 2022~2023년 기간 중 개인별로 미지급한 명절 특별위로금(2,100,000원)을 감사일 현재까지 개인별로 지급하지 않았음.

2. 시설 후원금 수입·사용 결과 미보고 및 사용 부적정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에 따르면 사회복지사업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이나 그 밖에 자산(이하 “후원금”이라

한다)의 수입·지출 내용을 공개하여야 하며 그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하고, 후원금에 관한 영수증 발급,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 그 밖에 후원금 관리 및 공개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보건복지부령) 제41조의6 및 제41조의7에 따르면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결산보고서를 제출할 때에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시설의 장은 후원금을 후원자가 지정한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을 금하고 있으며, 후원자가 사용용도를 지정하지 아니한 후원금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사용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사용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비지정후원금은 법인 운영비 및 시설 운영비로 사용하되, 간접비로 사용하는 비율은 50%를 초과하지 못하고, 다만, 간접비 중에서는 업무추진비(기관운영비, 직책보조비, 회의비), 법인회계전출금, 부채상환금, 잡지출, 예비비 등으로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 시설비(간접비)는 시설 증·개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사용가능 하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별표 4] 행정처분의 기준 2. 개별기준 제4호에 따르면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또는 그 밖에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후원금을 사용용도 외로 사용한 때)에는 그 시설에 개선명령을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5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 파호에 따르면 후원금에 관한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청송군 ☺☺☺☺과에서는 노인복지시설에서 다음 회계연도 3월 31일 까지 결산보고서 제출 시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를 제대로 제출하였는지, 후원금의 사용용도가 적합한지, 보건복지부 지침에 정한 내용에 적합한지 등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고, 미이행 또는 적합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하여 시설의 재무·회계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아래 [표 2]와 같이 청송군 *****(*)센터 등 4개소에서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독촉,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고, 아래 [표 3]과 같이 청송**** 등 4개소에서 비지정 후원금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지침에서 정한 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하였음에도 개선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표 2]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미보고 등 현황

(단위 : 원)

시설유형	시설명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미보고 현황			조치현황		비고
		대상기간	보고시기 (결산서 보고)	후원금 금액	실제	정당	
계	4개 시설			86,336,838			
노인복지시설	청송군 *****(*)센터	2020년	2021.3월	8,504,060	미조치	과태료 부과	
	청송****	2022년	2023.3월	711,493	미조치	과태료 부과	
	****노인복지센터	2022년	2023.3월	76,561,285	미조치	과태료 부과	
	청송**** 노인복지센터	2022년	2023.3월	560,000	미조치	과태료 부과	

※ 청송군 제출자료 재구성

[표 3] 비지정후원금 부적정 사용 등 현황

(단위 : 원)

시설유형	시설명	비지정후원금 부적정 사용 현황				조치내용		비고
		대상기간 (보고시기)	후원금 구분	금액	내용	실제	정당	
계	4개 시설			113,514,218				
노인 복지시설	청송****	2021년 (2022.3.)	비지정 후원금	1,000,000	비지정후원금으로 간접비 100% 사용	미조치	개선명령	
	청송** ****	2021년 (2022.3.)	비지정 후원금	2,000,000	비지정후원금으로 간접비 99.8% 사용	미조치	개선명령	
	****	2021년 (2022.3.)	비지정 후원금	1,000,000	잡지출 집행(시설일반 계좌로 사유없이 전출)	미조치	개선명령	
	**** 노인복지센터	2020년 (2021.3.)	비지정 후원금	109,514,218	군수 승인없이 건물 증축 비용으로 사용	미조치	개선명령	

※ 청송군 제출자료 재구성

3. 시설운영위원회 관리 부적정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르면 시설의 장은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설에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하고,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²⁾ 중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민주성·투명성 제고 및 시설이용·생활자의 권익 향상 등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시설운영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시설생활자, 시설종사자 등에게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매년 1회 군수에게 예산 제출 시 함께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별표 4] 행정처분의 기준 2. 개별기준 제6호에 따르면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운영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시설에 개선명령을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청송군 ☺☺☺☺과에서는 노인복지시설에서 군수의 위촉 또는 임명을 받은 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시설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분기별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미이행 시 시정, 개선명령 등 조치를 하여 시설 운영의 민주성·투명성 및 시설이용·생활자의 권익이 향상되도록 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아래 [표 4]와 같이 청송***** 등 7개소에서 시설운영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거나, 분기별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지 않았음에도 개선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2)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제2항 각 호의 시설의 장, 시설 거주자 대표, 시설 종사자의 대표, 해당 시·군·구 소속의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그 밖에 시설의 운영 또는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법 제36조 제2항 각 호 중 같은 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2명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표 4] 시설운영위원회 미설치·미운영 등 현황

(단위 : 원)

시설유형	시설명	시설운영위원회 미설치 및 미운영 현황		조치현황		비고
		구분	내용	실제	정당	
노인 복지시설	청송*****	미설치	군수 위촉·임명 없이 임의로 운영	미조치	개선명령	
	*****	미설치	군수 위촉·임명 없이 임의로 운영	미조치	개선명령	
	****	미설치	군수 위촉·임명 없이 임의로 운영	미조치	개선명령	
	*****노인복지센터	미설치	군수 위촉·임명 없이 임의로 운영	미조치	개선명령	
	청송****노인복지센터	미설치	군수 위촉·임명 없이 임의로 운영	미조치	개선명령	
	청송*****	미설치	군수 위촉·임명 없이 임의로 운영	미조치	개선명령	
	*****노인복지센터	미운영	구성만 하고 정기회의 개최하지 않음	미조치	개선명령	

※ 청송군 제출자료 재구성

4. 노인요양시설확충(기능보강)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부적정

청송군 ☺☺☺☺과에서는 노인복지시설의 기능보강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2023년 노인요양시설확충(기능보강) 보조사업을 추진하였다.

「지방보조금법」 제7조, 제8조 및 제10조에 따르면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으려는 자는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기일 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법령, 조례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 여부,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 등을 조사하여 지체 없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 그 교부결정의 내용을 지체 없이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조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전에 시행한 공거나 사업에 대하여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할 수 없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은 예외적으로 교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청송군 ☺☺☺☺과에서는 경상북도 *****과로부터 2023. 5. 4. 2023년 노인요양시설확충(기능보강)사업 추진을 위한 국도비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³⁾ 통지를 받은 사실이 있다.

따라서 청송군 ☺☺☺☺과에서는 노인요양시설확충(기능보강)사업의 국도비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통지를 받은 경우, 보조사업의 신속·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즉시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도록 안내하여야 했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서와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아 지체 없이 지방보조금 교부여부의 결정 및 그 내용을 통지함으로서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이후에 보조사업을 추진하도록 조치하여야 했으며, 보조금 교부여부 결정 검토 시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전에 시행한 공사나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을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아래 [표 5]와 같이 경상북도 *****과로부터 국도비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통지(2023. 5. 4.)를 받고도 보조사업자 *****에게 지방비(도비 및 군비)를 포함한 보조금 교부신청에 대한 안내를 하지 않았고, 사업이 시행(계약일자 2023. 8. 29. / 착공일자 2023. 9. 4.)되기 전까지 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금 교부신청 접수, 보조금 교부여부의 결정 및 교부결정 통지를 하지 않았으며, 보조사업자에게 공사시공 입찰, 계약, 착공 등 보조사업을 추진하도록 5월 경 구두로 협의한 사실이 있다.

또한,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없이 이미 보조사업이 시행된 이후, 10월 경 사업계획 변경⁴⁾ 문의에 대한 검토 과정에서 보조금 교부여부의 결정 및 교부결정 통지를 하지 않은 사실을 인지하여 이미 시행된 공사에 대하여 2023. 10. 26. 뒤늦게 보조금 교부결정 및 통지를 한 사실이 있다.

3) 2023년 노인요양시설확충(기능보강)사업 국·도비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1차) [경상북도 *****과-7707(2023.5.4.)]

4) 사업계획 변경 내용 : 외벽 개보수공사 낙찰차액 20,614천 원을 낙상방지 침대 교체(시설장비 보강) 비용으로 변경하여 집행

[표 5] 노인요양시설확충(기능보강)사업 보조금 지원 및 추진 현황

(단위 : 천 원)

연도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보조금					내용
			합계	국비	도비	군비	자부담	
2023	2023년 노인요양시설확충 (기능보강)사업	*****	212,066	95,430	66,800	28,630	21,206	추진 경과 (아 래)
추진 경과								
일 자	주요건명	시행주체	내 용				비 고	
2023. 5. 4.	국도비보조금 교부결정 및 통지	경상북도	국도비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통지 (보건복지부→경상북도→청송군)				경상북도 *****과-7707호	
2023. 6.13.	외벽공사 입찰공고	*****	***** 외벽개선공사 나라장터 입찰공고				입찰공고문	
2023. 8.29.	외벽공사 계약	*****	***** 외벽개선공사 계약 (시공자 : 주식회사*****)				공사계약서	
2023. 9. 4.	외벽공사 착공	*****	***** 외벽개선공사 착공 (시공자 : 주식회사*****)				착공계	
2023.10.26.	교부결정 및 통지 (보조사업자)	청송군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통지 (청송군→*****)				청송군 ☺☺☺☺과-40787호	
2023.11. 3.	외벽공사 준공	*****	***** 외벽개선공사 (시공자 : 주식회사*****)				준공계	
2023.12. 7.	보조금 교부신청 (보조사업자)	*****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청송군→*****)				***** -2023-01호	
2023.12.11.	준공 보고	*****	사업준공에 따른 보고 및 보조금 청구 (청송군→*****)				지방보조금 청구서	
2023.12.12.	현장 확인	청송군	준공보고에 따른 현장확인 (출장결과보고서)				청송군 ☺☺☺☺과-47119호	
2023.12.12.	보조금 교부	청송군	사업완료에 따른 국·도·군비보조금 교부 (청송군→*****)				청송군 ☺☺☺☺과-47170호	

※ 청송군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청송군수는

- 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주의)
- ② 개별 미지급된 특별위로금 2,100,000원은 개인별로 지급하도록 조치하시고,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검토하여 조치하시고, 시설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등 행정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시정)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물품 구매 적격심사 경영상태 평가 부적정
소 관 청 청송군
관 계 부 서 ※※※※※※ ※※※※과
내 용

청송군 ※※※※※※ ※※※※과에서는 2021년에서 2022년 기간 동안 과수화상병 사전 방제 약제구입, 주산지일관기계화사업 임대농업기계 구입(봄스프레이어), 광역농작업 대행단 농업기계 구입(전동가위)과 관련하여 낙찰자 결정을 위한 적격심사를 실시 하고 아래 [표 1]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1] 계약 체결 현황

(단위 : 천 원)

계약명	계약일	계약금액	입찰공고일	계약상대자
2021년 과수화상병 사전방제 약제 구입	2021. 2. 17.	376,990	2021. 1. 28.	*****
2021년 주산지일관기계화사업 임대농업기계 구입(봄스프레이어)	2021. 6. 10.	120,000	2021. 5. 21.	*****
광역농작업대행단 농업기계 구입(전동가위)	2022. 4. 11.	135,080	2022. 3. 23.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르면 계약 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⁵⁾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재정 지출의 부담이 되는

5) 예규 제134호(시행 2021. 1. 1.), 예규 제161호(시행 2021. 5. 7.), 예규 제198호(시행 2022. 1. 11.)

입찰에서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입찰자의 납품 이행능력, 입찰가격, 신인도 등을 심사하여야 하며, 물품 구매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며, 적격심사서류 중 입찰공고일 후에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는 심사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계약담당자는 제출된 서류의 미비, 오류, 미제출 등으로 인하여 적격 통과점수에 미달 되는 적격심사대상자에게 1회에 한하여 7일(재난 복구사업은 3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보완·추가 제출하게 하도록 되어 있고, 보완·추가 요구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로만 심사하도록 되어 있으며,

기한 안에 보완·추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및 보완·추가 제출한 후에도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 되는 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를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청송군 ※※※※※※ ㉠㉠㉠㉠과에서는 적격심사대상자가 제출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의 등급평가일 및 유효기간을 확인하여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고 유효기간 안에 있는 신용평가등급만을 인정하여 평가하여야 했고, 입찰공고일 이후에 평가하거나 유효기간 안에 있지 아니한 신용평가등급에 대하여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보완요구 하고 제출하지 않을 경우 최하등급으로 평가하여야 했으며, 물품 구매 적격심사 통과점수가 85점 이상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후순위자에게 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하여 적격심사를 하여야 했다.

그런데 청송군 ※※※※※※ ㉠㉠㉠㉠과에서는 ‘2021년 과수화상병 사전방제 약제 구입’, ‘2021년 주산지일관기계화사업 임대농업기계 구입(봄스프레이어)’, ‘광역

농작업대행단 농업기계 구입(전동가위)의 응찰⁶⁾ 업체에 대한 적격심사를 하면서 아래 [표 2]와 같이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의 등급평가일이 입찰공고일 이후인 자료를 제출받았음에도 이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고 보완요구 없이 평가등급을 부적정하게 인정하여 심사하였다.

[표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내역

계약명	업체명	입찰공고일	등급평가일	등급유효기간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비고
2021년 과수화상병 사전방제 약제 구입	*****	2021. 1. 28.	2021. 1. 28.	2021. 6. 30.	B0	입찰공고일 이후 평가
2021년 주산지일관 기계화사업 임대농업기계 구입(봄스프레이어)	*****	2021. 5. 21.	2021. 6. 3.	2022. 6. 2.	B0	입찰공고일 이후 평가
광역농작업대행단 농업기계 구입 (전동가위)	*****	2022. 3. 23.	2022. 4. 1.	2022. 6. 30.	B+	입찰공고일 이후 평가

한편 위 사실이 감사기간 중 지적되어 계약담당자를 통해 해당 업체들에게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고 유효기간 안에 있는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의 제출을 요청한 결과 이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그 결과 청송군 ※※※※※※ 과에서는 아래 [표 3]의 적격심사와 같이 정당하게 평가할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85점)에 미달하는 부적격 업체인 ***** (70.18점), ***** (66점), ***** (66점)와 계약을 체결하였다.

6) 적격심사 대상으로 2021년 과수화상병 사전방제 약제 구입의 1순위 업체는 ‘*****’이며, 2021년 주산지일관기계화사업 임대농업기계 구입의 3순위 업체는 ‘*****’ 이고, 광역농작업대행단 농업기계 구입의 1순위 업체는 ‘*****’ 임

[표 3] 적격심사 결과

(단위 : 천 원)

계약체결현황				심사분야·항목	배점	심사평점	정당평점	비고	
계약명	계약상대자	계약금액	계약체결일						
계						98.18	70.18		
2021년 과수화상병 사전방제 약제 구입	*****	376,990	2021. 2. 17.	물품납품	기술능력	10	10	10 ⁷⁾	적격 통과 점수 (85점)
				이행능력	경영상태	30	28	0 ⁸⁾	
				입찰가격		60	59.18	59.18 ⁹⁾	
				신인도		+2~-2	1	1 ¹⁰⁾	
계						85	66		
2021년 주산지일관 기계화 사업 임대농업기계 구입 (봄스프레이어)	*****	120,000	2021. 6. 10.	물품납품	기술능력	10	10	10 ¹¹⁾	적격 통과 점수 (85점)
				이행능력	경영상태	20	19	0 ¹²⁾	
				입찰가격		70	55	55 ¹³⁾	
				신인도		+2~-2	1	1 ¹⁴⁾	
계						85	66		
광역농작업대행단 농업기계 구입 (전동가위)	*****	135,080	2022. 4. 11.	물품납품	기술능력	10	10	10 ¹⁵⁾	적격 통과 점수 (85점)
				이행능력	경영상태	20	19	0 ¹⁶⁾	
				입찰가격		70	55	55 ¹⁷⁾	
				신인도		+2~-2	1	1 ¹⁸⁾	

조치할 사항 청송군수는

- 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7) 물품구매는 입찰자 모두 만점(10점) 부여

8) 입찰공고일 이후에 평가된 신용평가등급(경영상태평가) 자료는 '없음(0점)'으로 평가

9)

$$59.18 = 60 - 2 \times \left| \left(\frac{88}{100} - \frac{\text{입찰가격}(376,990,000)}{\text{예정가격}(430,418,950)} \right) \times 100 \right|$$

10) 소상공인 신인도 : 1점

11) 물품구매는 입찰자 모두 만점(10점) 부여

12) 입찰공고일 이후에 평가된 신용평가등급(경영상태평가) 자료는 '없음(0점)'으로 평가

13)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1.7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5점으로 함

$$55 = 70 - 4 \times \left| \left(\frac{88}{100} - \frac{\text{입찰가격}(120,000,000)}{\text{예정가격}(125,623,000)} \right) \times 100 \right|$$

14) 소상공인 신인도 : 1점

15) 물품구매는 입찰자 모두 만점(10점) 부여

16) 입찰공고일 이후에 평가된 신용평가등급(경영상태평가) 자료는 '없음(0점)'으로 평가

17)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1.7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5점으로 함

$$55 = 70 - 4 \times \left| \left(\frac{88}{100} - \frac{\text{입찰가격}(135,080,000)}{\text{예정가격}(136,453,925)} \right) \times 100 \right|$$

18) 소상공인 신인도 : 1점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개인용 컴퓨터 및 모니터 구매 부적정
소 관 청 청송군
관 계 부 서 ㄱ과
내 용

청송군 ㄱ과에서는 행정업무의 능률 향상과 신속한 업무 처리를 위해 매년 노후된 개인용 컴퓨터와 모니터(본청, 사업소, 읍면) 및 프린트에 대한 수요조사와 보급계획¹⁹⁾을 아래 [표 1]과 같이 수립하고 있다.

[표 1] 개인용 컴퓨터와 모니터 등 수요조사 및 보급 계획 현황

(단위 : 천 원)

연번	사업명	사업기간	소요예산	구입대수	구입방법
합계			520,550		
1	2021년 행정사무기기 보급	'21. 1. 1. ~ 12. 31.	127,500	PC 110대, 모니터 59대, 프린터 22대	조달구입 (제3자단가계약)
2	2022년 행정사무기기 보급	'22. 1. 1. ~ 12. 31.	129,350	PC 110대, 모니터 65대, 프린터 23대	조달구입 (제3자단가계약)
3	2023년 행정사무기기 보급	'23. 1. 1. ~ 12. 31.	129,350	PC 110대, 모니터 67대, 프린터 22대	조달구입 (제3자단가계약)
4	2024년 행정사무기기 보급	'24. 1. 1. ~ 12. 31.	134,350	PC 110대, 모니터 67대, 프린터 22대	조달구입 (제3자단가계약)

※ 청송군 제출자료 재구성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르면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구매할 때 수요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이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 상대방으로 하여 물품 공급계약(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수요기관의 장은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공급업체)로부터 조달청장이

19) 청송군 ㄱ과-477(2021. 1. 7.)호 / ㄱ과-24417(2021. 12. 24.)호 / ㄱ과-22659(2022. 12. 26.)호 / ㄱ과-17766(2023. 11. 21.)호

고시하는 금액 이상의 수요물자를 구매하려는 경우 2인 이상의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그 제안서의 심사 결과에 따라 해당 수요물자의 납품 업체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조달청 고시) 제2조, 제3조, 제6조, 제10조에 따르면 수요기관의 장은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²⁰⁾으로 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이 1억 원 이상이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5인 이상의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2단계경쟁에 참여하도록 제안요청을 하여야 하며, 제안을 요청을 받은 계약상대자는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계약가격 이하로 제안하되, 최대 10% 범위에서 가격을 할인하여 제안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기준 제5조에 따르면 수요기관의 장은 2단계경쟁 회피를 목적으로 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을 1억 원²¹⁾ 미만으로 분할하여 납품요구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아울러 「개인용 컴퓨터와 모니터에 대한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 기준」(조달청 고시) 제3조에 따르면 개인용 컴퓨터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해당하는 데스크톱컴퓨터 및 일체형컴퓨터이며, 모니터는 개인용 컴퓨터와 통합되어 단일 건으로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이 이뤄지는 제품이라고 되어 있다.

따라서 청송군 99과에서는 개인용 컴퓨터와 모니터 등을 구매할 경우 통합하여 단일 건으로 발주하여야 하며, 매년 노후된 개인용 컴퓨터와 모니터 등의 필요한 수량을 전수조사 후 구매예산이 1억 원 이상일 경우 1억 원 미만으로 분할하여 제3자단가계약에 의한 방법으로 구매할 것이 아니라,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을 통해 납품 대상업체를 선정하고 개인용 컴퓨터와 모니터 등을 구매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2021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구매예산이 1억 원 이상으로 다수공급자계약 물품인 개인용 컴퓨터와 모니터 등을 일괄 발주하여 2단계경쟁

20)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제공하는 제품의 판로가 필요하다고 지정한 제품을 말함

21) 수요물자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에는 1억 원 이상

제안요청을 통해 구매하여야 함에도, 아래 [표 2]와 같이 1회 구매 시 1억 원 미만으로 수차례 시기별·품목별로 분리하여 구입의뢰 요청 및 나라장터종합쇼핑몰에 다수공급자계약으로 등록되어 있는 제품을 경쟁 없이 제3자단가계약으로 구매한 사실이 있고, 이로 인해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을 통해 일괄 구매했을 경우 계약금액 기준 최대 10%²²⁾의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표 2] 개인용 컴퓨터 및 모니터 구매 계약 현황

(단위 : 천 원)

연번	사업명(전산기기)	사업기간	계약금액	시행방법 (2단계경쟁, 제3자단가)	계약상대자	예산과목
합 계			401,466			
1	PC 구입	'21. 2. 3. ~ 2. 18.	74,015	제3자단가	****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
2	액정모니터 구입	'21. 2. 3. ~ 2. 18.	8,685	제3자단가	****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
3	PC 구입	'21. 6. 2. ~ 7. 2.	35,098	제3자단가	****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
4	액정모니터구입	'22. 2. 11. ~ 3. 13.	7,105	제3자단가	****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
5	PC 구입	'22. 2. 11. ~ 3. 13.	43,323	제3자단가	****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
6	액정모니터 및 레이저프린터 구입	'22. 6. 17. ~ 7. 17.	1,015	제3자단가	****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
7	PC 구입	'22. 6. 17. ~ 7. 17.	56,637	제3자단가	****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
8	PC 및 액정모니터 구입-액정모니터	'22. 12. 9. ~ 12. 15.	4,047	제3자단가	****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
9	PC 및 액정모니터 구입	'22. 12. 9. ~ '23. 1. 8.	7,550	제3자단가	****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
10	PC 구입	'23. 2. 21. ~ 3. 23.	40,050	제3자단가	****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
11	액정모니터 구입	'23. 2. 10. ~ 3. 12.	5,325	제3자단가	****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
12	PC 구입	'23. 6. 3. ~ 7. 3.	60,445	제3자단가	****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
13	액정모니터 구입	'23. 5. 31. ~ 6. 30.	1,281	제3자단가	****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
14	PC 구입	'24. 1. 4. ~ 2. 3.	51,390	제3자단가	****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
15	액정모니터 구입	'24. 1. 4. ~ 2. 3.	5,500	제3자단가	****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

※ 청송군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청송군수는

- 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22) '21~'24 기간 동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제안요청 시 최대 10%인 약 40,146천 원의 예산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조사료경영체 기계장비 지원사업 업무처리 부적정
소 관 청	청송군
관 계 부 서	◆◆◆◆과(전 ****과)
내 용	

청송군 ◆◆◆◆과(전 ****과)에서는 조사료 생산의 기계화·규모화를 통해 양질의 조사료 생산을 위하여 조사료경영체 기계장비 지원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1. 조사료경영체 기계장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선정 관련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농어업·농어촌에 관련된 용자·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어업경영체는 농업경영정보²³⁾를 등록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6조 제1항에 따르면 협업적 농업 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유통·가공·수출 및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4호에 따른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는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營農組合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르면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거나 농어촌 관광휴양 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회사법인(農業會社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그리고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시행지침」(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업인,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생산자단체 등 지원자격을

23) 농업경영체 농업경영정보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농지·축사·임야·원예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농산물, 생산방법 및 가축사육 마릿수 등 농업경영 관련 정보 및 용자·보조금 등의 수령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규정하고 있고, 농업법인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농림축산식품부 훈령) 제35조 제9항 및 별표 6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농림축산식품부 훈령) 제35조 제9항에 따르면 사업대상자가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인 경우 별표 6에 따른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규정 별표 6의 공통 지원요건에 따르면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법」 제16조와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뜻하며, 농업사업을 지원받는 농업법인은 조합원 5인 이상의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의 출자지분이 전체의 1/10 이상이고, 「농어업경영체법」에 정해진 사업범위 외의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며, 총출자금이 1억 원 이상,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어야 하며,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상 등 농업법인에 대한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상기 부서에서는 ‘연도별 조사료경영체 기계장비 지원사업’ 추진 시 신청자들이 제출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 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 등을 활용하여 법령, 관련 규정 및 지침 등에서 정한 지원대상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부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당해 사업 지원기준에 맞는 대상자를 선정하고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했다.

[표 1] 조사료경영체 기계장비 지원사업 현황

(단위 : 천 원)

사업 연도	신청법인명(대표)	장비명	보조액	총사업비	보조금 지원 비대상 사유	실제 자본금	비고
	합계		112,250	285,400			
2020	***영농조합법인 (***)	농용베일러	60,000	157,000	출자금 1억 원 이하	5,000	
2021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 (***)	결속기	21,000	42,000	“	30,000	
2021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 (***)	5.5톤화물트럭	31,250	86,400	“	5,000	

※ 청송군 제출자료 재구성

그런데 상기 부서에서는 위 [표 1]과 같이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조사료

경영체 기계장비 지원사업의 지원자격이 되지 않는 농업법인 3곳에 대해 2020년부터 2021년까지 보조금 112,250천 원을 부적정하게 지원하였다.

2. 지방보조사업 업무 추진 관련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기일 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모(公募)절차를 통하여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2개월 이내)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이 경우 실적보고서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보고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상기 부서에서는 ‘조사료경영체 기계장비 지원사업’ 추진 시 「지방보조금법」 및 상기 1.에 규정된 관련 농업 보조사업 사업수행 지침에 따라 사업의 지원기준을 명확히 정하여 이를 공고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널리 알린 후 공모의 방법을 통해 신청·접수를 받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신청된 보조사업신청서를 검토하고 해당 사업의 지원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들에게 통보한 후 관련 사업을 추진하여야 했으며, ‘2021년 조사료경영체 기계장비 지원사업’에 대한 보조사업자의 실적보고 시 첨부된 증빙서류를 면밀히 검토하고, 보조사업자가 실제 집행한 사업비가 해당 보조사업자가 직접 집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증빙서류가 미비할 경우 보완을 요청하는 등 보조사업 실적보고 검토를 적정히 수행하여야 했다.

[표 2] 2021년도 조사료경영체 기계장비 지원사업 사업실적 보고 현황

(단위 : 천 원)

신청법인명(대표)	장비명	보조액	사업계획 상 차량등록자	실제 등록자	사업계획 상 공급받는자	실제공급받는자	비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 (***)	5.5톤 화물트럭	31,250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 (***)	***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 (***)	**** 태양광발전소	

그런데, 상기 부서에서는 ‘조사료경영체 기계장비 지원사업’ 추진 시 청송군 관내에 축산업과 관련된 농업경영체가 소수라는 이유로 공모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사업별 지원기준, 지원대상 등을 명확히 하지 아니한 채로 해당 법인에 구두로 관련 지원사업을 통보하여 신청하게 함으로써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이 신청하게 하는 등 「지방보조금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채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이에 더해 신청서를 적정히 검토하지 않아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농업경영체를 선정하였으며, 위 [표 2]와 같이 ‘2021년 조사료 경영체 기계장비 지원사업’ 추진 결과로 제출된 실적보고서를 보조사업자인 신청법인(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과 공급받는자(***** 태양광발전소)가 상이 하고, 차량 등록자가 신청법인이 아닌 신청법인 대표(***) 개인에게 등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채 보조사업 완료로 업무를 처리하였다.

이로 인해 상기 1.과 2.를 종합하여 보면 법령 및 관련 규정 등에서 정한 사업추진 기준을 명확히 하여 공고하고 이를 널리 알려 지원대상 여부를 보조사업 신청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담당자가 2차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선정된 신청법인들이 농업인 개인과 실질적인 지원기준에 대한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이라는 이유로 선정되어 다른 농업인과의 형평성을 저해하였으며, 보조사업자의 보조금의 실제집행 여부를 적정히 검토하지 않아 보조사업신청서 상 사업계획과 실제 집행이 일치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청송군수는

- 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주의)
- ② 보조사업 요건에 맞게 차량소유권의 변경 등록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시정)

경 상 북 도

통 보 · 시 정 요 구

제 목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부적정
소 관 청	청송군
관 계 부 서	※※※※※※※ ※※※※과
내 용	

청송군 ※※※※※※※ ※※※※과에서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에 따라 농기계의 이용률 제고 및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 농가의 농업 경영개선, 영농편의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농기계 임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 농기계 임대료 기준, 조례 반영 부적정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8조의2 제5항에 따르면 임대사업용 농업기계의 종류, 임대료 및 임대사업 운영기준 등이 포함된 임대사업 시행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제2항 [별표1의2] 임대사업 시행 기준에 농업기계의 1일 임대료²⁴⁾ 산정방식 등 임대료 기준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고 있다.

또한, 「농기계임대사업 시행지침」(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임대농기계를 영농적기에 농가가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조례를 조기에 제·개정하고, 임대농기계 구매 및 이용에 따른 A/S 방안을 강구하는 등 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청송군 ※※※※※※※ ※※※※과에서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제2항 [별표1의2] 임대사업 시행 기준상의 임대료 기준에 부합하게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를 개정·운영하여야 했다.

24) 농업기계의 1일 임대료는 농업기계의 구매 가격에 따라 구간별로 1) 100만 원 미만 10,000원 ~ 18) 5,000만 원 이상 210,000원으로 적용

그런데 감사 기간 중 위 부서에 대하여 임대사업 시행 기준에 부합되게 운영 조례를 개정했는지 확인한 결과 아래 [표 1]과 같이 「청송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의 임대료 기준과 다르게 반영·운영 되고 있었다.

[표 1] 농기계 임대료 기준 현황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제2항 [별표1의2]	「청송군 농기계 임대사업 및 농작업 대행사업 운영 조례」 제9조 제1항 [별표1]																																																												
<p>1. 농업기계의 임대료 기준</p> <p>가. 농업기계의 1일 임대료는 농업기계의 구입 가격에 따라 아래의 산정방식으로 산정한다.</p> <table border="1" data-bbox="181 775 769 1592"> <thead> <tr> <th>농업기계 구입가격</th> <th>1일 임대료</th> </tr> </thead> <tbody> <tr><td>1) 100만 원 미만</td><td>10,000원</td></tr> <tr><td>2)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td><td>12,000원</td></tr> <tr><td>3)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td><td>15,000원</td></tr> <tr><td>4) 300만 원 이상 400만 원 미만</td><td>19,000원</td></tr> <tr><td>5) 4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td><td>23,000원</td></tr> <tr><td>6) 500만 원 이상 600만 원 미만</td><td>28,000원</td></tr> <tr><td>7) 600만 원 이상 700만 원 미만</td><td>32,000원</td></tr> <tr><td>8) 700만 원 이상 800만 원 미만</td><td>36,500원</td></tr> <tr><td>9) 800만 원 이상 900만 원 미만</td><td>41,000원</td></tr> <tr><td>10) 900만 원 이상 1,000만 원 미만</td><td>46,000원</td></tr> <tr><td>11) 1,000만 원 이상 1,500만 원 미만</td><td>65,000원</td></tr> <tr><td>12) 1,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미만</td><td>85,000원</td></tr> <tr><td>13) 2,000만 원 이상 2,500만 원 미만</td><td>110,000원</td></tr> <tr><td>14) 2,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td><td>130,000원</td></tr> <tr><td>15) 3,000만 원 이상 3,500만 원 미만</td><td>160,000원</td></tr> <tr><td>16) 3,500만 원 이상 4,000만 원 미만</td><td>185,000원</td></tr> <tr><td>17) 4,000만 원 이상 4,500만 원 미만</td><td>195,000원</td></tr> <tr><td>18) 4,500만 원 이상</td><td>210,000원</td></tr> </tbody> </table> <p>다. 가목에도 불구하고 농업기계의 상태 및 지역 임대료의 수준 등을 고려하여, 임대료를 가목에 따라 산정한 임대료의 ±15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p>	농업기계 구입가격	1일 임대료	1) 100만 원 미만	10,000원	2)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	12,000원	3)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	15,000원	4) 300만 원 이상 400만 원 미만	19,000원	5) 4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	23,000원	6) 500만 원 이상 600만 원 미만	28,000원	7) 600만 원 이상 700만 원 미만	32,000원	8) 700만 원 이상 800만 원 미만	36,500원	9) 800만 원 이상 900만 원 미만	41,000원	10) 900만 원 이상 1,000만 원 미만	46,000원	11) 1,000만 원 이상 1,500만 원 미만	65,000원	12) 1,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미만	85,000원	13) 2,000만 원 이상 2,500만 원 미만	110,000원	14) 2,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130,000원	15) 3,000만 원 이상 3,500만 원 미만	160,000원	16) 3,500만 원 이상 4,000만 원 미만	185,000원	17) 4,000만 원 이상 4,500만 원 미만	195,000원	18) 4,500만 원 이상	210,000원	<table border="1" data-bbox="817 788 1423 1648"> <thead> <tr> <th>농 기계 취 득 가 액</th> <th>임 대 료 (1일 기준)</th> </tr> </thead> <tbody> <tr><td>100만 원 미만</td><td>5,000원</td></tr> <tr><td>100만 원 이상 ~ 300만 원 미만</td><td>10,000원</td></tr> <tr><td>300만 원 이상 ~ 500만 원 미만</td><td>20,000원</td></tr> <tr><td>500만 원 이상 ~ 900만 원 미만</td><td>30,000원</td></tr> <tr><td>900만 원 이상 ~ 1,100만 원 미만</td><td>35,000원</td></tr> <tr><td>1,100만 원 이상 ~ 1,500만 원 미만</td><td>50,000원</td></tr> <tr><td>1,500만 원 이상 ~ 2,000만 원 미만</td><td>60,000원</td></tr> <tr><td>2,000만 원 이상 ~ 3,000만 원 미만</td><td>80,000원</td></tr> <tr><td>3,000만 원 이상 ~ 4,000만 원 미만</td><td>100,000원</td></tr> <tr><td>4,000만 원 이상</td><td>140,000원</td></tr> </tbody> </table>	농 기계 취 득 가 액	임 대 료 (1일 기준)	100만 원 미만	5,000원	100만 원 이상 ~ 300만 원 미만	10,000원	300만 원 이상 ~ 500만 원 미만	20,000원	500만 원 이상 ~ 900만 원 미만	30,000원	900만 원 이상 ~ 1,100만 원 미만	35,000원	1,100만 원 이상 ~ 1,500만 원 미만	50,000원	1,500만 원 이상 ~ 2,000만 원 미만	60,000원	2,000만 원 이상 ~ 3,000만 원 미만	80,000원	3,000만 원 이상 ~ 4,000만 원 미만	100,000원	4,000만 원 이상	140,000원
농업기계 구입가격	1일 임대료																																																												
1) 100만 원 미만	10,000원																																																												
2)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	12,000원																																																												
3)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	15,000원																																																												
4) 300만 원 이상 400만 원 미만	19,000원																																																												
5) 4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	23,000원																																																												
6) 500만 원 이상 600만 원 미만	28,000원																																																												
7) 600만 원 이상 700만 원 미만	32,000원																																																												
8) 700만 원 이상 800만 원 미만	36,500원																																																												
9) 800만 원 이상 900만 원 미만	41,000원																																																												
10) 900만 원 이상 1,000만 원 미만	46,000원																																																												
11) 1,000만 원 이상 1,500만 원 미만	65,000원																																																												
12) 1,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미만	85,000원																																																												
13) 2,000만 원 이상 2,500만 원 미만	110,000원																																																												
14) 2,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130,000원																																																												
15) 3,000만 원 이상 3,500만 원 미만	160,000원																																																												
16) 3,500만 원 이상 4,000만 원 미만	185,000원																																																												
17) 4,000만 원 이상 4,500만 원 미만	195,000원																																																												
18) 4,500만 원 이상	210,000원																																																												
농 기계 취 득 가 액	임 대 료 (1일 기준)																																																												
100만 원 미만	5,000원																																																												
100만 원 이상 ~ 300만 원 미만	10,000원																																																												
300만 원 이상 ~ 500만 원 미만	20,000원																																																												
500만 원 이상 ~ 900만 원 미만	30,000원																																																												
900만 원 이상 ~ 1,100만 원 미만	35,000원																																																												
1,100만 원 이상 ~ 1,500만 원 미만	50,000원																																																												
1,500만 원 이상 ~ 2,000만 원 미만	60,000원																																																												
2,000만 원 이상 ~ 3,000만 원 미만	80,000원																																																												
3,000만 원 이상 ~ 4,000만 원 미만	100,000원																																																												
4,000만 원 이상	140,000원																																																												

2. 임대 농기계 구매·관리·운영 부적정

「청송군 물품관리 조례」 제2조에 따르면, 청송군수는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청송군 농기계 임대사업 및 농작업 대행사업 운영 조례」 제18조에 따르면 농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고, 같은 조례 제20조에 따르면 위원회는 임대 농기계 기종 및 규격 선정에 관한 사항, 임대료 산정에 관한 사항, 폐농기계 및 내구연한 도래 농기계 처리에 관한 사항, 임대 농기계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조례 제5조에 따르면 임대농기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각 기종별로 임대 농기계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고 임대 농기계에는 각 기종별로 임대 농기계 표지를 임대 농기계의 잘 보이는 곳에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농기계임대사업 시행지침」(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기계 임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임대 농기계 수요조사²⁵⁾를 의무적으로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농기계 구매계획에 검토·반영하여 구매하도록 되어 있고, 재배양식, 재배작물 변경에 따라 더 이상 농업인의 임대수요가 없는 농기계는 반드시 불용처리하여 임대농기계의 이용률을 높이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청송군 ※※※※※※ ㉠과에서는 지역 영농현황 및 농기계 이용 실태 등을 고려하여 임대용 농기계를 구매 및 불용 처리해야 하며, 구매한 임대용 농기계 운영의 적정 여부와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등을 확인·점검하고 지속적인 홍보 및 농업인 교육을 통해 임대 농기계 활용도를 제고시켜 나가야 했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아래 [표 2]와 같이 임대용으로 구매한 농기계 중 임대 일수가 5일 이하인 농기계가 로우더 등 총 10종(23대) 322,396,465원이며, 그 중 한 번도 임대 실적이 없는 농기계가 무논정지기 등 3종(3대) 57,640,000원에 이르는 등 기준보다 부족한 수요조사²⁶⁾와 면밀하지 않은 구매 검토를 하였고, 특히

25) 관내 농업인이 2,000명 이상인 경우 300명 이상, 2,000명 미만인 경우 200명 이상 등 충분한 인원을 대상으로 상시 조사하며, 사업 신청을 위한 1~2개월 미만의 단기 조사를 금지함

26) 선호 농기계 수요조사 : 2021년 미시행, 2022년 1회 88명, 2023년 1회 47명 대상 조사

수확기의 경우 2018. 11. 10. 총 12대 217,688,000원에 구매 후 감사일 현재까지의 임대 실적은 4일이며, 콤바인의 경우 2018. 8. 20. 1대 38,240,000원에 구매 후 임대 실적이 전혀 없이 임대 보류로 방치된 사실이 있다.

[표 2] 임대용 농기계 사용 현황

(단위 : 원)

연번	기종명	보유대수	이용농가	임대일수	구매금액	구매일
계	10종	23	20	21	322,396,465	
1	로우더(농업용트랙터)	1	5	5	5,775,000	2012-12-30
2	수확기(동력수확)	12	4	4	217,668,000	2018-11-10
3	그래플(농업용트랙터)	1	3	3	2,760,000	2023-07-14
4	동력예취기	1	3	3	5,419,645	2009-07-31
5	봄스프레이어(승용관리기)	2	3	3	16,439,820	2020-05-19
6	잔가지파쇄기(농업용트랙터)	2	1	2	16,360,000	2022-05-09
7	분무기	1	1	1	334,000	2021-06-18
8	무논정지기(농업용트랙터)	1	0	0	6,200,000	2009-09-18
9	동력연무기	1	0	0	13,200,000	2014-04-24
10	콤바인	1	0	0	38,240,000	2018-08-20

※ 청송군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아래 [표 3]과 같이 2022. 12. 9. 매각 시 낙찰된 농기계와 다른 기대번호의 농기계를 낙찰자에게 지급하였음에도 임대 농기계 대장 관리와 표지 부착 등에 소홀하여 이미 매각된 농기계가 2023년 매각 계획 수립 시 감정평가와 입찰공고의 물품²⁷⁾에 포함되는 결과를 초래한 사실이 있다.

[표 3] 낙찰 농기계 오지급 현황

(단위 : 원)

27) 청송군 ☆☆☆☆☆ 제2023-93호 매각물품 4번(평가액 97,500원)에 공고 후 유찰되어 청송군 ☆☆☆☆☆ 보관 중에 있음

낙찰일	기종/기대번호	형식	취득일	구매금액	낙찰자	낙찰가	비고
2022.12.9.	콩탈곡기/ 000799	ESP-300	2013.06.28.	2,270,000	***	250,000	2023년 재공고
-	콩탈곡기/ 000802	ESP-300	2013.06.28.	2,270,000	-	-	*** 소유중

※ 청송군 제출자료 재구성

3. 임대 농기계 불용물품 매각 부적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 제76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각을 목적으로 한 물품이거나 불용품이 아니면 매각할 수 없고, 물품을 매각할 때에는 일반입찰에 부치도록 되어 있으며, 공유재산법 제76조 제2항에 따르면 물품을 매각할 때에는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경매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에 따르면 불용품을 일반입찰로 매각하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공고 및 개찰·낙찰 선언을 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 제3항에 따르면 처분단가가 500만 원 이하이며 처분 총액이 1천만 원 이하인 불용농기계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농업인에게 매각하는 경우 등에만 처음부터 일반입찰을 하지 않고 경매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청송군 임대 농기계 불용물품 입찰공고²⁸⁾에 따르면 입찰참여자는 입찰 구비서류인 신분증, 농업인확인서류(농업경영체등록확인 또는 농지원부) 등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입찰 구비서류의 미제출자가 행한 입찰은 무효로 되어 있다.

따라서 청송군 ※※※※※※ ※※※※과에서는 불용 임대 농기계를 매각하는 경우 폐농기계, 내구연한 도래 및 농기계 처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에 심의 의결한 뒤 처분 총액이 1천만 원 이상이 되는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공고 및 개찰·낙찰선언을 하여야 하며 입찰공고문의 참여자격 및 입찰방법 등을 준수 하여야 했다.

28) 청송군 ※※※※※※ 공고 제2021-46호, 제2021-64호, 제2022-62호, 제2023-93호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2021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불용 임대 농기계 총 308대 155,118,000원을 매각하면서 위원회의 심의²⁹⁾를 거치지 않은 채 처분 총액이 1천만 원을 넘는 농기계 275대 202,019,500원을 아래 [표 4]와 같이 경매와 수의 계약을 통해 매각하였으며, 2021년과 2022년 불용 임대 농기계 매각 시 입찰 공고문에 명시된 농업경영체 확인서 및 농지원부 등 입찰 구비서류를 제출받지 않고 매각한 사실이 있다.

[표 4] 불용 임대 농기계 매각(폐기) 현황

(단위 : 원, 대, 명)

매각년도	매각공고 현황		낙찰(수의계약) 현황			비고
	대수	처분총액 (감정평가액)	대수	낙찰금액	낙찰자	
계	308	155,118,000	275	202,019,500	88	
2021	185	48,988,500	185	77,220,500	36	경매
2022	60	55,840,000	42	55,809,500	21	경매
2023	63	50,289,500	46	68,059,500	29	경매
2024	-	-	2	930,000	2	수의계약

※ 청송군 제출자료 재구성

이로 인해 불용 임대 농기계 275대 202,019,500원이 공유재산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어 매각 처분되었으며, 아래 [표 5]와 같이 입찰 무자격자가 농업용 고소작업차 등 총 3대 4,088,500원의 농기계를 부적절하게 낙찰받는 특혜를 제공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표 5] 입찰 무자격자(농업경영체 미등록자) 낙찰현황

(단위 : 원)

29) 청송군 ☆☆☆☆☆-3304(2020. 5. 8.)호, 2397(2021. 4. 2.)호, 1607(2022. 3. 4.)호, 2652(2023. 4. 5.)호 관련,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운영위원회를 4회 개최하면서 임대사업 추진현황과 실적, 신규 임대 농기계 구매와 관련한 기종 및 수량만을 심의함

매각년도 (물품번호)	기종	기대번호	주소	낙찰자	낙찰금액	비고
계	3대			2명	4,088,500	
2022 (6)	농용고소작업차 (테이블형)	HS46-905013	청송군 **읍 **로 4333-62	***	3,658,500	
2022 (11)	(동력)보행제초기	HA-MLEJL063				
2023 (35)	논두렁조성기	HB-008069	청송군 **면 **로 80-9, 3층	***	430,000	

※ 청송군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청송군수는

- 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주의)
- ②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의 농업기계의 임대료 기준에 부합하게 농기계 임대사업 관련 조례를 조속히 개정하시기 바라며,(통보)
- ③ 임대 수요가 없는 농기계의 불용처리 등 활용도 제고 방안을 마련하여 임대 농기계 관리에 적정을 도모하시기 바랍니다.(시정)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청송 자연휴양림 운영·관리 부적정
소 관 청 청송군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청송군 ○○○○과에서는 청송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청송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자연휴양림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례 제7조 제2항에 따르면 군수는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려는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도록 매표소 입구 및 통합예약시스템에 시설사용료 등 요금표를 게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위 부서에서는 청송군 조례에서 정한 시설사용료 등 요금표를 매표소 입구 및 통합예약시스템에 반영하여 청송 자연휴양림의 시설물을 사용하는 방문객들이 사용시설에 맞는 사용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사용료를 정확히 고지하여 시설별 사용료를 납부받아야 했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2021. 9. 27.자로 개정된 「청송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1항 별표1에 따라 변경된 사용료를 청송 자연휴양림 시설물을 사용하는 방문객들에게 납부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1. 10. 1. ~ 2024. 1. 31. 기간 동안은 「청송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 2021. 9. 27.)」 가 아닌 개정 이전의 「청송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시행 2016. 2. 22.)」 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 받아 아래 [표]와 같이 실제 적정히 받아야 할 사용료 금액 대비 68,834,800원을 과소 납부받은 사실이 있다.

[표] 「청송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 이후 시설사용료 미반영 내역

(단위 : 원)

기간	건수	개정전 요금 총액		개정 후 요금 총액		차액		차액합계액
		주중	주말	주중	주말	주중	주말	
2021.10.1.~ 2024.1.31	4,686건	125,836,200	213,370,000	159,281,000	248,760,000	33,444,800	35,390,000	68,834,800

※ 청송군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청송군수는

- 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청송군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청송군 □□□□□□과에서는 “←←←←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아래 [표 1]과 같이 2023. 7. 20. (주)**건설 ***와 계약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표 1] 공사 현황

(단위 : 백만 원)

공 사 명	위 치		사업량	공 사 비			사업기간	도급자	비고
	읍면	리동		계	도급	관급			
←←←←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	**	소하천 정비 1.2km	3,881	2,830	1,051	2023. 7. 20. ~ 2025. 7. 18.	(주)**건설 ***	
←←, ←←←←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 **	** **	실시설계 용역 1식	925	925		2021. 6. 15. ~ 2022. 12. 26. ※ 과업중지중	(주)**** **종합 건축사사무소 *** 외 1개사	**** 선납품

1. 소하천구역의 결정 미이행

「소하천정비법」 제3조에 따르면 소하천은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 또는 폐지하고,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소하천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 또는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3조의3에 따르면 관리청은 소하천(소하천시설을 포함한다)의 지정·변경 또는 폐지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소하천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토지의 구역, 소하천시설이 설치된 토지의 구역, 제방이 있는 곳은 그 제방으로부터 물이 흐르는 쪽의 토지의 구역을 소하천구역으로 결정하거나 소하천구역을 변경 또는 폐지하여야 하며, 소하천구역을 결정·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관리청과 협의한 후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 또는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그 내용을 고시하고, 일반인이 관계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관리청인 청송군 [청송군]과에서는 ←←←← 소하천 지정내용을 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 경상북도지사와 협의한 후 소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내용을 고시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변경 및 폐지하여야 했다.

그런데 청송군 [청송군]과에서는 ←←←← 소하천 전체 L=1.626km중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로 지정된 소하천 하류 1.2km에 대하여 “←←←←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방하천인 ←←←←과 합류되는 지점 소하천의 유로(물이 흐르는 길)를 아래 [그림]과 같이 변경하면서 그에 따라 변경되는 부분의 소하천을 지정하고, 일부 소하천(L=0.6km)은 폐지하지 않고 사업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소하천구역의 적합 여부 등을 검토받지 못한 채 공사를 추진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림] 소하천 유로 변경 현황



※ 청송군 제출자료 재구성

2.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 부적정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4조 내지 제11조에 따르면 발주청은 설계자로 하여금 이 고시에 따라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그 산출근거를 명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기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을 고려하여 설계 성과품의 일부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발주청은 공사기간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결정한 공사기간과 그 산출근거를 입찰서류인 현장설명서(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 특수조건)에 명시하여야 하며, 건설공사의 입찰참가자는 입찰서류에 명시된 공사기간 및 산출근거를 검토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발주청인 청송군 □□□□□과에서는 공공 건설공사를 추진하면서 설계 시 설계자로부터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적정성을 검토한 후 그 산출근거를 입찰서류인 현장설명서에 명시하여야 했다.

그런데 청송군 □□□□□과에서는 위 공사를 추진하면서 실시 설계자인 (주)*****종합건축사사무소로 하여금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그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제출하게 하지 않았으며, 근거 없이 제시한 공사기간(24개월)에 대하여도 적정성을 검토하지 않았다.

그 결과 공사기간과 그 산출근거를 현장설명서(계약특수조건)에 명시하여 입찰을 진행하지 못하게 되어, 적정 공사기간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표] 공공 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의해 산출한 공사기간

공사기간	준비기간 + 비작업일수 + 작업일수 + 정리기간	비고
706일(23개월)	40일 + 257일 + 379.2일 + 30일	

※ 청송군 제출자료 재구성

3. 건설공사 안전관리 부적정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 제101조의2에 따르면 건설사업자는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등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등을 시행하는 경우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 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착공 전에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안전 관리 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청은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건설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승인한 안전관리계획서 사본과 검토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청송군 □□□□□과에서는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계약상대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 안전관리를 이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했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위 공사를 추진하면서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등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를 추진하면서 안전관리 계획수립 대상 건설공사임에도 안전관리계획 미검토 및 그 결과 미통보하는 등 안전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4. 건설공사 품질관리 부적정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및 제90조에 따르면 건설사업자는 총공사비가 5억 원 이상인 토목공사에 대하여 시험 시설 및 인력의 확보 등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미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확인을 받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품질시험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청은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을 심사하고 심사 결과를 확정하여 건설사업자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987호, 2020. 12. 16.) 제90조 및 제139조에 따르면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

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한 품질시험계획 요건대로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작업을 성실하게 수행하는지 검사·확인 후 발주청에 승인³⁰⁾을 요청하여야 하며, 품질시험계획이 발주청으로부터 승인되기 전까지는 시공자로 하여금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 및 [별표 5]에 따르면 총공사비가 100억 원 미만인 건설공사의 경우 초급 품질관리 대상 공사로서 품질 검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시험·검사장비와 20m² 이상의 시험실 규모를 갖추고, 초급기술인 1명 이상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건설사업자는 총공사비가 5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인 초급 품질관리 대상공사에 대해 착공 시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청에 승인요청하여야 하고 발주청은 이를 검토 후 건설사업자에게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하며,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시험실 및 시험장비 등을 구비하여야 했다.

그런데 청송군 □□□□□과에서는 위 공사를 추진하면서 초급 품질관리 대상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품질시험계획을 미승인하고, 시험실 및 시험·검사 장비를 구비 하지 않는 등 품질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5. 토석정보공유시스템³¹⁾(TOCYCLE) 정보 미입력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7조 및 「토석정보공유시스템 이용요령」(국토교통부 고시) 제4조에 따르면 발주청은 건설공사에 발생하는 토석이 다른 건설공사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사토·순성토의 설계량과 발생량이 1,000m³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토석정보공유시스템(TOCYCLE)’에 정보를 입력하고 절차에 따라 관리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발주청인 청송군 □□□□□과에서는 본 공사의 사토량이 11,902m³으로 ‘토석정보공유시스템(TOCYCLE)’ 입력 대상임에 따라 이 내용을 입력하고 관리하여야 했다.

30) 발주청은 7일 이내에 승인하여야 함.

31) 건설공사에 발생하는 토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토석정보공유시스템

그런데 청송군 □□□□□과에서는 본 공사를 추진하면서 감사일 현재까지 토석 정보를 입력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지 못하였다.

6. 공사비 과다계상 등 공사 감독업무 소홀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 및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 수행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987호, 2020. 12. 16.) 제4조, 제138조 제1항, 제142조에 따르면 공사감독자는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계약서 그 밖에 관계 서류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그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감독업무에 임하여야 하며, 감독자는 설계도면·시방서와 자재의 사용 및 시공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시공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원가계산 방법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과다하게 증액하여 산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 변동 및 그 밖에 계약 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설계변경 등을 통하여 계약 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자격·업무·권한·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안전관리자 수 및 선임방법은 [별표 3]과 같으며, 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 금액(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일체 비용 및 부가가치세 등 포함)이 50억 원 이상으로 되어 있다.

아울러 「건설업 안전관리자 업무처리 지침」(고용노동부, 2023. 6.)에 따르면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사업장의 경우 안전관리자의 인건비 및 업무수행 출장비(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선임 보고한 날 이후 발생한 비용에 한정한다)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건설공사 발주자는 건설 표준품셈, 각종 제시방서 및 현장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공법을 적용하여야 하며, 적절한 예정가격을 산출하여 경제적이고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공사비 산출에 적정을 기하여야 하며, 현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불필요하거나 과다 계상된 공정은 설계 변경하여 감액하여야 했다.

그런데 청송군 □□□□□□과에서는 위 공사를 추진하면서 소교량 교면포장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아스팔트콘크리트가 아닌 고가의 LMC포장³²⁾을 불필요하게 설계 내역에 반영하여 45,000천 원(제경비 포함)을 과다 계상하였고, 공사 금액이 50억 원 미만인 사업으로 안전관리자 선임이 필요 없음에도 추가로 사업 내역에 안전관리자 선임 비용 153,000천 원(제경비 포함)을 과다 계상하였다.

한편,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 예규 제318호, 2021. 6. 14.) 차량방호 안전시설 편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교량에 설치된 교명주는 차도 쪽으로 돌출된 구조로서 차량과 충돌할 가능성이 높고 특히, 교량에 접근하면서 도로의 폭이 좁아지는 경우에는 더욱 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지므로 근본적으로 차량 충돌에 의한 사고 피해의 우려가 높은 교명주는 설치하지 않는 방향으로 교량 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고,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 요령」(국토교통부, 2021. 1.)에 따르면 교명주는 “장대교 및 특수교량과 같이 조형미를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고, 소교량은 충분대 미설치 시 교명판 1개, 설명판 1개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어무골1교 교명주 2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에 반영하여 6,000천 원(제경비 포함)을 과다 계상하였다.

그 결과 과다 설계 등으로 사업비 204,000천 원(제경비 포함)이 불필요하게 반영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32) LMC(Latex Modified Concrete)교면포장 공법은 교량 구조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고무성질의 Latex와 콘크리트를 혼합하는 특수공법으로, 초기 시공비용이 높아 장대교량과 고속도로, 교통량이 많은 도로 등의 포장에 주로 사용

조치할 사항 청송군수는

- 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주의)
- ② 소하천 구역의 미결정 사항은 「소하천정비법」에 따라 적정하게 조치하시고, 안전관리계획 미승인 사항 및 품질시험계획 미승인 등 품질관리 소홀 사항은 「건설기술 진흥법」 등에 따른 적정한 조치와 토석정보공유시스템에 토석 정보를 입력하고 절차에 따라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 ③ 과다 계상된 사업비 204,000,000원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감액하시기 바랍니다.(시정)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00리 0000 개보수공사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청송군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청송군 □□□□□과에서는 청송군 **면 00리의 1945년도 준공된 노후 저수지인 0000에 대해 2022. 11. 정밀안전진단 결과(안전등급 “D등급”³³⁾)를 반영하여 개보수하고자 다음과 같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개략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공사(용역)현황

(단위 : 백만 원)

공 사 명 (용 역 명)	위 치	사 업 량	공사금액			사업기간	도급자 (건설사업자)	비고 (진도)
			계	도급액	관급액			
00리 0000 개보수공사	청송군 **면 00리 일원	준설 13,257㎡ 사통·복통 보수 그라우팅67공	723	551	172	2023.09.07. ~ 2024.05.03.	**종합건설(주) ***	40%
00리 0000 개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	청송군 **면 00리 일원	실시설계용역 1식	29.5	29.5	-	2023.02.21. ~ 2023.07.15.	(주)***** ***	100%

1. 적정 공사기간 산정 부적정

「건설기술 진흥법」 제45조의2 및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4조에 따르면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성·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당 건설공사의 규모 및 특성,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여 그 산출근거를 명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기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을 고려하여 발주청에 설계 성과품의 일부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3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안전등급 중 D(미흡)등급은 “주요 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임

그리고 발주청은 공사기간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공사기간과 그 산출근거를 입찰서류인 현장설명서(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특수조건)에 명시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류에 명시된 공사기간 및 산출근거를 검토하여 입찰에 참여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청송군 □□□□□□과에서는 설계자가 설계서를 제출했을 때 공사기간에 대한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설계사인 (주)*****로부터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그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제출하게 하지 않았으며, 근거없이 제시한 공사기간(8개월)에 대하여 적정성을 검토하지 않았다.

그 결과 공사기간과 산출근거를 현장설명(계약특수조건)에 명시하여 입찰을 진행하지 않아 적정 공사기간³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게 되었다.

2. 품질시험계획 미수립 등 품질관리 부적정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및 제90조에 따르면 총공사비가 5억 원 이상 토목공사, 연면적 660㎡이상 건축공사, 총공사비 2억 원 이상 전문공사에 대하여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시험시설 및 인력의 확보 등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55조 제2항에 따르면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사업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 및 [별표 5]에 따르면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중급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이하 ‘초급 품질관리 대상공사’)는 품질검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시험장비를 구비하고, 20㎡이상의 시험실 설치 및 초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을 품질관리자로 배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34) 산정결과 267일(9개월) : 준비기간 30일, 비작업일수 63일, 작업일수 164일, 정리기간 10일

그리고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8조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종류별, 공종별 시험종목·방법 및 빈도 등 품질시험 기준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건설사업자는 총공사비가 5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인 초급 품질관리 대상공사에 대해 착공 시 품질관리자 배치 내용을 포함한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이를 검토 후 건설사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했다.

그런데 발주청인 청송군 □□□□□과에서는 초급 품질관리 대상공사인 본 공사를 추진하면서 건설사업자가 착공 시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거나 품질관리자를 배치하지 않았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품질관리 업무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3. 토석정보공유시스템 미입력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7조 및 「토석정보공유시스템 이용요령」(국토교통부 고시) 제4조에 따르면 발주청은 건설공사에 발생하는 토석이 다른 건설공사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사토·순성토의 설계량과 발생량이 1,000m³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토석정보공유시스템(TOCYCLE)’에 정보를 입력하고 절차에 따라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발주청인 청송군 □□□□□과에서는 본 공사의 준설토 반출량이 13,257m³으로 ‘토석정보공유시스템(TOCYCLE)’ 입력 대상임에 따라 이 내용을 입력하고 관리하여야 했다.

그런데 청송군 □□□□□과에서는 토석정보를 입력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다른 건설공사에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함에 따른 예산낭비 우려가 있다.

4. 공사감독 업무소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르면 설계변경은 1)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에 해당하는 때에 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설계변경은 공정 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완료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공사감독자는 공사 시행과정에서 현지여건 변경 등으로 인해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시공자의 의견을 포함한 서면으로 검토의견 등을 설계변경 전에 실정보고를 하고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발주청의 방침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 시기 등을 명확히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은 시공 전에 설계변경을 완료하여야 했다.

그런데 실시설계 당시 저수지 내 담수된 상태로 준설물량을 추정 산출하였으며 설계도서 상 “중·횡단 계획의 지반선은 추정선으로 저수지 방류 후 현황 및 중·횡단 측량을 실시하고, 측량결과를 발주청과 협의 후 변경 시공할 것”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시공자가 저수지 방류 후 측량결과 및 사토장 변경 관련 실정보고 없이 준설물량 5,700m³를 반출하였는데도, 청송군 □□□□□과에서는 시공자에 실정보고 하도록 지시하지 않았고 운반거리 등이 변경되었는데도 감사일 현재까지 22,535천 원(제경비 포함)에 대해 감액하지 않는 등 공사 감독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청송군수는

- 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주의)

- ② 품질관리 업무 소홀 및 토석정보공유시스템 미등록 사항에 대해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조치하시고, 사업비 22,535천 원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감액하시기 바랍니다.(시정)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 ∇∇∇∇∇∇ 신축공사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청송군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청송군 ≈≈≈≈과에서는 ∇∇읍 ∇∇리 239-1번지의 ∇∇∇ ∇∇∇∇∇∇ 신축공사를 아래 [표 1]과 같이 추진하면서, 2019년 7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설계용역 감독 부적정, 우수유출 저감대책 및 시설비 목적 외 사용 등 공공건축물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위법(부당)하게 처리하였다.

[표 1] 공사 현황

(단위 : 백만 원)

사업명	사업내용	발주부서 (사업기간)	건축 협의	착공 (완료일)	설계 금액	공사금액	도급자 (감리자)	비고
∇∇∇ ∇∇∇∇∇∇ 신축공사	업무시설 4,212.72㎡	≈≈≈≈과 (‘19.7.~‘24.3.)	‘23.11.7.	‘23.12.5. (착공신고x)	894	11,670	**종합건설㈜ ((주)**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1. 피난·방화 관련 설계용역 감독 부적정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9조 및 제43조에 따르면 용역감독자는 설계도서의 내용이 설계용역 과업지시서 등에 따라 용역 과업이 적합하게 수행되도록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야 하며, 준공검사 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용역성과를 정밀히 확인·점검하여 지적사항을 미리 시정조치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건축법」 제4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9조에 따르면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의 층으로부터 지상으로 통하는 계단은 아래 [그림]과 같이 계단실은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하고,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 설비를 하는 등 피난계단의 구조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는 계단실의 바깥쪽과 접하는 창문 등은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창문 등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해야 하며, 건축물의 바깥쪽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는 계단은 그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 외의 창문 등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청송군 ≈≈≈≈과에서는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의 층으로부터 지상으로 통하는 계단은 피난계단의 구조로 설치하고 피난계단의 계단실 창문은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창문 등으로부터 2m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하는 등 설계도서의 내용이 설계용역 과업지시서 및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용역 과업이 적합하게 수행되도록 확인·점검하여 지적사항을 미리 시정조치 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청송군 ≈≈≈≈과에서는 ▽▽▽ ▽▽▽▽▽▽ 신축공사 설계도서 내용 확인·점검 업무를 수행하면서 아래 [표 2]와 같이 내부 피난계단의 창문이 인접한 창문으로부터 2m가 아닌 0.6m만 이격된 채로 설계되어 있어 법정 이격 거리에 1.4m 미달 된 설계도서를 건축사사무소 청연이 제출하였는데도 이에 대한 시정 및 보완요구 없이 2023. 7. 21. 실시설계용역을 준공검사 후 납품받은 사실이 있다.

[표 2] 피난계단 관련 건축허가 부적정 현황

대지위치	건축허가	건축주	주용도	연면적 (㎡)	적정 피난거리	설계 피난 거리	비고
▽▽읍 ▽▽리 239-1 등 3필지	'23.11.7.	청송군	업무시설	4,212.72	2m이상	0.6m	1.4m 미달

[그림] 실내 피난계단의 구조

2. 우수유출 저감대책 미수립

「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1항에 따르면 개발사업 등을 시행하거나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우수유출 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우수유출 저감시설³⁵⁾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건축 협의 대상 중 대지면적이 2,000㎡ 이상이거나 건축물의 연면적이 3,000㎡ 이상인 건축(신축·증축·개축·이전을 포함)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우수유출 저감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79조에 따르면 우수유출 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청송군 ≈≈≈≈과에서는 대지면적이 2,000㎡ 이상이거나 건축물의 연면적이 3,000㎡ 이상인 건축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우수유출 저감대책을 수립하고 관련 기준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청송군 ≈≈≈≈과에서는 ▽▽▽ ▽▽▽▽▽▽ 신축공사의 설계 용역감독 업무를 수행하면서 대지면적이 2,000㎡를 초과한 5,866㎡, 연면적이 3,000㎡를 초과한 4,212.72㎡로 우수유출 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에 해당하는데도, 이러한 계획과 대책 수립을 누락한 설계서에 대해 시정 및 보완 요구 없이 2023. 7. 21. 실시설계용역을 준공검사 후 납품받은 사실이 있다.

3. 건축공사 시설비 목적 외 사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변동 및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 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 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 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고, 설계변경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하도록 되어 있다.

35) “우수유출 저감시설”이란 우수(雨水)의 직접적인 유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우수를 지하로 스며들게 하거나 지하에 가두어 두는 시설과 가두어 둔 우수를 원활하게 흐르도록 하는 시설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및 「지방재정법」 제4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급 관리계획에 따라 물품을 취득·사용 또는 처분하도록 되어 있고 취득한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정수 관리 대상 물품³⁶⁾ 중 정수가 배정되지 않은 물품은 취득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청송군 ≈≈≈≈과에서는 공공건축물 건립사업을 진행하면서 건축공사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설계변경을 하여야 하고, 정수 관리 대상 물품은 수급 관리계획에 따라 정수를 배정받아 구매·관리하여야 하며, 건축공사 사업비는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의 용도로만 경비를 사용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청송군 ≈≈≈≈과에서는 ∇∇∇ ∇∇∇∇∇∇ 건축공사를 추진하면서 내역서 상에 아래 [표 3]과 같이 테이블냉장고, 전기인덕션렌지 및 칼도마 복합소독기 등은 정수 관리 대상 물품으로 취득·사용 및 처분에 관한 수급 관리계획을 세워 정수를 배정받아 구매하여야 하나, 구매 전 수급 관리계획 수립 없이 건축공사 시설비로 편성된 예산 약 26,310천 원을 목적 외 용도로 편성한 사실이 있다.

[표 3] 시설비 목적 외 편성 설계 내역서

(단위 : 천 원)

연번	공종	규격	단위	수량	재료비		비고	
					단가	금액		
소계							26,310	
1	테이블냉장고	1200*700*850	개(EA)	3	1,136	3,408		
2	(포트볼) 전기인덕션렌지	295*360*65	개(EA)	12	245	2,940		
3	(케비넷형) 렌지거치대	8*600*650	개(EA)	6	472	2,832		
4	배기후드	1200*1600*600	개(EA)	3	863	2,590		
5	(서탑형) 케비넷조리대	1200*600*850	개(EA)	6	863	5,178		
6	(케비넷형) 1조 거치대	900*600*850	개(EA)	6	500	3,000		
7	(조립형) 냉동 냉장고	1900*805*1920	개(EA)	1	2,363	2,363		
8	(케비넷형) 식기천장	1200*600*1800	개(EA)	1	1,909	1,909		
9	칼도마복합소독기	1100*600*1900	개(EA)	1	2,090	2,090		

36)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요 물품의 정수를 정한 물품

4.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부적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르면 중소기업부장은 경쟁제품 중에서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필요한 자재로서 공사의 품질과 효율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공기관이 직접 구매하여 제공하기에 적합한 제품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선정하고 고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르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추정가격 40억 원 이상인 종합공사를 발주하려는 공공기관의 장은 직접구매 대상품목의 추정가격이 4천만 원 이상³⁷⁾인 경우 직접구매 대상품목을 해당 공사의 관급자재로 설계에 반영하여 직접 구매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청송군 ≈≈≈≈과에서는 추정가격 40억 원 이상인 ∇∇∇ ∇∇∇∇ ∇∇ 신축공사를 발주하면서 추정가격이 4천만 원 이상인 직접구매 대상품목을 구매할 경우 중소기업부장이 고시한 제품의 직접구매 대상 여부를 검토하여 직접구매 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청송군 ≈≈≈≈과에서는 추정가격이 4천만 원 이상인 엘리베이터 3대를 설치하는 설계도서를 검토하면서 중소기업부장이 고시한 제품의 직접구매 대상 여부를 검토하지 않은 채 해당 공사의 관급자재로 구입하지 않고 사급자재로 구입하도록 계획된 내역서를 아무런 조치 없이 납품받아 중소기업자 다수의 입찰참가 기회를 제한한 사실이 있다.

5.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 부적정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의2에 따르면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의 예방 등 건설공사의 시공을 관리하기 위하여 건설공사³⁸⁾ 착공 전까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

37) 세부품목의 추정가격이 5백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세부품목에 한정하여 직접구매를 하지 않을 수 있음.

관리 방식, 건설기술인 또는 공사감독자 배치계획 및 건설사업관리 대가 산출내역,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업무범위 등을 포함하여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91조에 따르면 건설사업관리계획을 미수립 또는 미준수하여 건설공사를 착공 및 건설공사 진행 시에는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고,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8조에 따르면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기준을 참고하여 공사감독자 배치기준을 정하여야 하고, 공사감독자 배치기준(안)을 작성한 후 그 내용을 최소 7일 이상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여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야 하며, 배치기준(안), 의견 수렴결과 및 검토보고서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발주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청송군 ≈≈≈과에서는 건설공사 착공 전까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방식, 건설기술인 또는 공사감독자 배치계획 및 건설사업관리 대가 산출내역,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업무범위 등을 포함하여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기준을 참고하여 공사감독자 배치기준을 정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 배치기준(안)을 작성한 후 그 내용을 최소 7일 이상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여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배치기준(안), 의견수렴결과 및 검토보고서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발주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청송군 ≈≈≈과에서는 ▽▽▽ ▽▽▽▽▽▽ 신축공사를 추진하면서 공사감독자 배치기준(안)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았으며, 의견수렴결과 등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38) 총공사비가 5억 원 이상인 토목공사,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총공사비가 2억 원 이상인 전문공사

조치할 사항 청송군수는

- 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주의)
- ② 피난계단 창호 인접 창문으로부터 2m 이격, 우수유출 저감대책 수립, 정수 관리대상 물품 시설비 제외 및 엘리베이터 관급자재 구매 등은 건축법 등 관련 법에 따라 변경 시행하시기 바랍니다.(시정)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내화·방화 관련 건축허가 처리 부적정
소 관 청	청송군
관 계 부 서	IOIOIOIO과
내 용	

청송군 IOIOIOIO과에서는 건축주 ***로부터 2022. 8. 22. **면 **리 145 등 2필지 상 창고 증축(연면적 847.26㎡, 증축연면적 91.35㎡)을 위한 건축허가 신청서를 제출받아 같은 해 8. 29. 건축(증축)허가를 처리한 건축물 등 총 18건의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위법(부당)하게 처리하였다.

1. 내화구조 관련 건축허가 처리 부적정

「건축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르면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및 창고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창고 시설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요구조부와 지붕은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건축법」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에 따르면 창고시설은 건축물의 벽, 반자, 지붕 등 내부의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고, 난연성능이 표시된 복합자재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청송군 IOIOIOIO과에서는 바닥면적 합계가 500㎡ 이상인 창고, 바닥면적 합계가 해당 용도로 쓰는 400㎡ 이상인 노유자시설 중 노인복지시설 및 장례 시설 등의 지붕은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고, 창고시설은 난연성능이 표시된 복합자재 시험성적서가 제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했다.

그런데도 청송군 IOIOIOIO과에서는 2022. 3. 11. 건축주 ****영농조합법인이 **면 **리 55-1 등 2필지에 신청한 창고시설 신축허가 사항을 검토하면서 바닥면적이 1,966.6㎡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가 넘어 지붕을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는데도 관련 업무 검토를 소홀히 하는 등 아래 [표 1]과 같이 총 2건의 건축허가 건을 처리하면서 내화구조 관련 규정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또한, 건축주 ***가 **면 **리 145 등 2필지 상 창고시설에 대하여는 아래 [표 2]와 같이 총 5건의 건축 허가 건을 처리하면서 난연성능이 표시된 복합자재 시험성적서를 확인 후 사용승인을 하여야 하나, 관련 법 검토를 소홀히 한 채 복합자재 시험성적서 없이 사용승인 처리한 사실이 있다.

[표 1] 내화구조 관련 건축허가 부적정 현황

(단위 : ㎡)

연번	대지위치	건축허가	건축주	주용도	연면적	증축 연면적	지붕내화 구조인증서	비고
1	**읍 **리 557 등 3필지	'20.10.05.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창고시설	870.94	-	무	
2	**면 **리 55-1 등 2필지	'22.07.29.	**** 영농조합법인	창고시설	1,966.6	-	무	

[표 2] 건축물 마감재료 관련 건축허가 부적정 현황

(단위 : ㎡)

연번	대지위치	건축허가	건축주	주용도	연면적	복합자재시험 성적서	비고
1	**면 **리 413-2	'23.03.06.	****협동조합	창고시설	2,676.98	무	
2	**면 **리 145 등 2필지	'22.08.29.	***	창고시설	847.26	무	
3	**면 **리 55-1 등 2필지	'22.07.29.	****영농조합법인	창고시설	1,966.6	무	
4	**읍 **리 784-107 등 11필지	'22.07.22.	청송군수	창고시설	1,289.98	무	
5	**면 **리 234-4	'22.05.10.	****협동조합	창고시설	2,835.1	무	

2. 방화구조 관련 건축허가 처리 부적정

「건축법」 제52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26조에 따르면 방화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와 내화구조는 방화성능, 품질관리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품질이 적합하다고 인정받아야 하며, 건축관계자 등은 품질 인정을 받은 건축자재 등만 사용하고, 인정받은 내용대로 제조·유통·시공을 하여야 하며, 방화문이라 함은 화재의 확대, 연소를 방지하기 위해 건축물의 개구부에 설치하는 문으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품질을 시험한 결과 성능을 확보한 구조라고 되어 있다.

또한, 「건축법」 제11조 및 제52조에 따르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³⁹⁾에 해당하는 건축물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는 방화에 지장이 없도록 인접 대지와의 이격거리를 고려하여 방화성능 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24조 제12항⁴⁰⁾에 따르면 「건축법」 제52조 제4항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인접대지 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와 인접대지 경계선 간의 거리가 1.5미터 이내인 경우 해당 창호는 방화유리창[한국산업표준 KS F 2845(유리구획 부분의 내화 시험방법)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시험한 결과 비차열 20분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 한다]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⁴¹⁾

따라서 청송군 IOIOIOIO과에서는 방화문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성능을 인정한 제품을 사용·시공 했는지 확인하여야 하고,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 건축사가 설계도면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39) 1. 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은 제외한다)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및 위락시설의 용도로 쓰이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나. 공장(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재 위험이 적은 공장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이는 건축물로부터 6미터 이내에 위치한 건축물
 2.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3. 3층 이상 또는 높이 9미터 이상인 건축물
 4.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쓰는 건축물
 5.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자가난방과 자가발전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을 포함한다), 자동차 관련 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40) 제24조 제12항 신설(국토교통부령 제868호, 2021. 7. 5. 일부개정·시행)

41) 다만,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 스프링클러의 헤드가 창호로부터 60센티미터 이내에 설치되어 건축물 내부가 화재로부터 방호되는 경우에는 방화유리창으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24조 제12항에 따른 방화유리창으로 설계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건축용도변경을 처리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청송군 IOIOIOIO과에서는 건축주 ****협동조합이 **면 **리 413-2에 2022. 11. 3. 허가 신청한 창고시설에 대하여 검토하면서 아래 [표 3]과 같이 관련 규정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인정한 방화문인증서가 없는데도 허가 처리한 사실이 있다.

또한, 2022. 1. 11. 건축주 ***이 **면 **리 7-24 등 2필지에 신청한 자동차 관련시설 용도변경신고 사항 등 총 10건의 건축 용도변경 허가 신청 건을 검토 하면서 아래 [표 4]와 같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방화유리창을 설치해야 하나 관계 법령 검토를 소홀히 하여 방화유리창으로 설계하지 않았 는데도 용도변경 허가를 처리한 사실이 있다.

[표 3] 방화문 관련 건축허가 부적정 현황

(단위 : m²)

대지위치	건축허가	건축주	주용도	연면적	증축 연면적	방화문 인증서	비고
면 **리 413-2	'23.03.06.	**협동조합	창고시설	2,676.98	1,856.98	무	

[표 4] 방화유리창 관련 건축허가(용도변경 포함) 부적정 현황

(단위 : m²)

연번	대지위치	건축허가	건축주	주용도	연면적	방 화 유리창	비고
1	***면 **리 72-2 등 5필지	'24.01.05.	청송군	교육연구시설	1,344.47	무	
2	**읍 **리 377	'23.07.28	***	숙박시설	1,188.66	무	
3	**면 **리 447-2	'23.06.12.	***	창고시설	768.81	무	
4	**면 **리 7-24 등 2필지	'22.04.19.	***	자동차 관련시설	319.26	무	
5	***면 **리 220-1	'21.11.12.	***	숙박시설	196.71	무	
6	***면 **리 220	'21.11.12.	***	숙박시설	228.68	무	
7	**면 **리 542	'22.11.17.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공장	1,257.64	무	
8	***면 **리 786	'22.11.15.	***	창고시설	48	무	

연번	대지위치	건축허가	건축주	주용도	연면적	방 화 유리창	비고
9	***면 **리 220-1	'21.12.31.	***	숙박시설	196.71	무	
10	***면 **리 786-1	'21.10.19.	사회복지법인****	노유자시설	963.16	무	

조치할 사항 청송군수는

- 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